
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<신설 2025. 1. 3.>

[시행일: 2025. 7. 3.] 제3호나목1)나)(1)의 개정규정

농지개량 기준(제52조의2 관련)

1.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

- 가.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.
- 나.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.

2.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

- 가.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, 폐지·변경을 수반하거나, 토사의 유출 및 배수·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.
- 나.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,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.

3. 그 밖에 농지의 객토, 성토,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

구분	기준
가. 객토 (흙 옮기기)	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.
나. 성토 (흙 쌓기)	<p>1)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,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</p> <p>가)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, 갯벌 흙,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)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나)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이 경우 (1), (2), (3)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·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·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(1) pH: 5.0 이상 7.5 이하</p>

(2) EC(dS m⁻¹): 2.0 이하

(3) 모래 함량(%): 70 이하

2) 1)에도 불구하고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.

가)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: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. 다만,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(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)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(1)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.

(1)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

(2) 1)나)(1)부터 (3)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

(3)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

나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: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

(1)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

(2)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(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)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

다. 절토
(흙 깎기)

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·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,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.